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29 선고 2020가단53108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위정미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신 담당변호사 채동우, 이준민, 박아현, 홍하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최유진

변 론 종 결 2021. 12. 21.

판 결 선 고 2022. 3.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7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D과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담보를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다.

2) C는 2019. 8. 19. 13:40경 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F에 있는 G한의원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를 침범하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E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서 원고는 2019. 9. 9.경부터 2020. 8. 10.경까지 피해자 E에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담보에 따라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6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사인 H 주식회사로부터 180,000,000원을 구상 환입하였다.

4)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E의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C에게 5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38298), 위 법원은 2021. 11. 29. ‘C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1.부터 화해권고결정 확정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2021. 12. 21. 확정되었다.

나. C의 부동산 처분행위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20.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20. 2.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 중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E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한 부분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나, 매매계약체결 이전 이미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C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매매계약 체결 무렵에는 이미 C가 E의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높은 개연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건물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더욱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재산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일 뿐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가 한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이 법원의 J단체, K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L, 주식회사 M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C의 동거녀가 2019. 8. ~ 2019. 9.경 이 사건 건물을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매물로 내놓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고지대에 있어 4~5개월이 경과하도록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피고는 2020. 1.경 기존 거주 주택의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라 거주할 주택을 구하던 중 C의 동거녀가 이 사건 건물을 매물로 내놓은 부동산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매매대금 150,000,000원에 매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결심하였다.

③ 이 사건 건물과 같은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O아파트 24평형의 2020. 1.경 시세는 150,000,000원에서 160,000,000원 정도였다.

④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 11.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15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잔금 135,000,000원은

2020. 2. 7. 지급하며, C는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어있던 P조합 명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⑤ 피고는 C에게 계약금으로 2020. 1. 3. 2,000,000원, 2020. 1. 10. 5,000,000원, 2020. 1. 11. 5,000,000원, 2020. 1. 12.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Q, R카드로부터 대출받은 돈 및 아들 S으로부터 받은 돈을 합하여 2020. 2. 6. 잔금 중 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0. 2. 7.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M은행으로부터 108,000,000원을 대출받아 C에게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였고, C는 위 돈으로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무렵부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등기 절차업무를 진행한 법무사에게 등기 관련 비용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

⑦ 피고와 C는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과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C의 구체적인 신용상태나 재산상황을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C와 특별한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의 재산상태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로 인하여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정원

별지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N에 있는

O아파트 T동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스라브지붕 23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935.36㎡

2층 935.36㎡

3층 935.36㎡

4층 935.36㎡

5층 935.36㎡

6층 935.36㎡

7층 935.36㎡

8층 935.36㎡

9층 935.36㎡

10층 935.36㎡

11층 935.36㎡

12층 935.36㎡

13층 935.36㎡

14층 935.36㎡

15층 935.36㎡

16층 935.36㎡

17층 935.36㎡

18층 935.36㎡

19층 935.36㎡

20층 935.36㎡

21층 935.36㎡

22층 935.36㎡

23층 432.26㎡

지하층 935.36㎡

부속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노인정,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1층 131.02㎡

2층 129.58㎡

3층 129.58㎡

부속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하3층 지하주차장

지하3층 1110.53㎡

지하2층 1110.53㎡

지하1층 1110.53㎡

부속건물

조적조 스라브 지붕 단층

경비실 7.92㎡

부속건물

조적조 스라브 지붕 단층

경비실 7.92㎡

부속건물

조적조 스라브 지붕 단층

경비실 7.92㎡

부속건물

조적조 스라브 지붕 단층

공중변소 7.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N 대 16,09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0층 U호 철근콘크리트조 59.88㎡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609,900분의 2,169 .끝.

